②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전신마취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 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코드 폐지 또는 변경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이 불가능한 경우 폐지 또는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 계산 예시

- ①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sup>주1)</sup>) 20회의 경우
- : 60분 x 1회 + 15분 x 20회 = 360분
  - → 마취시간 6시간 이상에 해당
- ②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sup>주1)</sup>) 10회의 경우
- : 60분 x 1회 + 15분 x 10회 = 210분
  - → 마취시간 6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 주1) 마취유지 :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마다 산정

# 제2-1조의7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3대질병" 또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부표2-8>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보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은 "수술"에서 제외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 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2-1조의8 "중환자실 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환자실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3대질병" 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집중치료실 또는 집중강화치료실)"(이하 "중환자실"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 과 시설규격(<부표2-7> 참조)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부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6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았을 때: 6시간이상 전신마취수술급여금(수술 1회당)
- 2.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3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6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았을 때: 3대질병 6시간이상 전신마취수술급여금(수술 1회당)
- 3. 특약보험기간 중「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3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3 대질병 중환자실입원급여금 (다만, 중환자실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60일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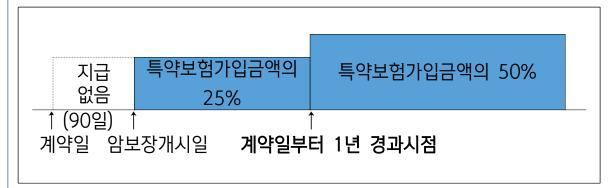
##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특약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에 의해 납입면제가 된 경우 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이 특약이 해당 약관의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보험료 납입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계약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취소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다만,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6시간이상 전신마취수술"을 받거나 "중환자실 입원"을 하더라도 회사는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6시간이상 전신마취수술급여금", "3대질병 6시간이상 전신마취수술급여금", "3대질병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더라도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④ 제3항의「"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1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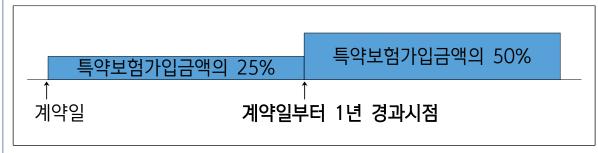
- 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주계약이 무효된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⑥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6시간이상 전신마취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 「"3대질병 6시간이상 전신마취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 또는 「"3대질병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 삭감지급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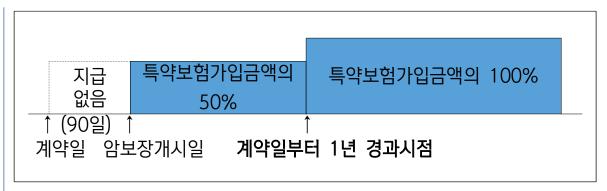
6시간이상 전신마취수술급여금(암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6시간이상 전신마취수술급여금("재해 또는 암"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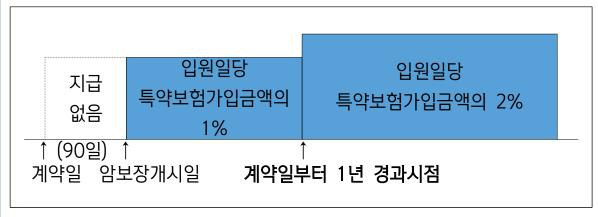
3대질병 6시간이상 전신마취수술급여금(암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대질병 6시간이상 전신마취수술급여금(암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대질병 중환자실입원급여금(암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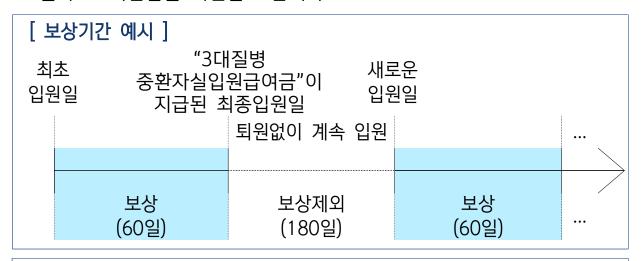


3대질병 중환자실입원급여금(암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입원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
<sup>↑</sup>
계약일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⑦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전신마취 수술 1 회당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2회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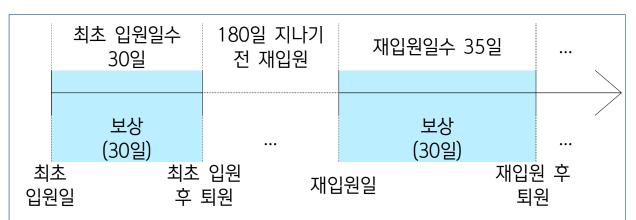
- 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마취시간을 더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⑧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 해당하는 "3대질병 중환자실입원 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⑨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 해당하는 "3대질병 중환자실입원 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8항을 적용합니다.
-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3대질병 중환자 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3대질병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 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 "계속적인 입원" 및 "새로운 입원"의 입원일수 계산 예시 ]

#### <사례 1>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다시 개시한 입원의 경우 "계속적인 입원"에 해당하며, 동일한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계산합니다.



⇒ "3대질병 중환자실입원급여금" 지급대상 입원일수 = 30일 + (35일 - 5일) = 60일(60일 한도)

#### <사례 2>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다시 개시한 입원의 경우 "새로운 입원"에 해당하며, 새로운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계산합니다.



- ①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 특약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도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계속 "3대질병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계속 입원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 ③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 도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 ⑭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3대질병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심신상실

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 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

# 제2-5조 사고증명서

- ① 제1-5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2호에서 말하는 이 특약의 사고증명서는 "사망진단서, 입원증명서, 수술증명서, 진단서(병명 및 분류코드 기입),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진료비계산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기재), 전신마취 종류와 마취시간, 수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취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등의 진료기록부,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이 특약은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 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민법 제 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 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 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 인이 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민법 제 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2-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이 특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 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감액 이후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최초 가입 당시에 안내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감액처리에 대한 설명

#### [ 감액 ]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계약자적립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의 해약환급금 지급 예시 ]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 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구 분         | 감액전           | 감액후          |
|-------------|---------------|--------------|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 500만원        |
| 감액시점의 해약환급금 | 400만원         | 200만원        |
| 감액할 때 지급금액  | 200만원 ( = 400 | 만원 - 200만원 ) |

####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sup>㈜</sup>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산출기초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이율 및 위험률 등

# 제2-8조의2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 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약내용에 상응하는 새 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 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판정기준 제도가 폐지되 는 경우
  -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판정기준 제도의 변경으 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 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 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안내할 경우 특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 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용, 보험료 변경내용, 특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안내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약내용 변경시점의 이 특약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2-9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②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특약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 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 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제2-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2-11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1.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일반형"보다 낮은 보험료 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2. 이 특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고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고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이후 특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 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누계액<sup>(주①)</sup> x "일반형"의 해약환급률<sup>(주②)</sup>

(주)

- ① 납입보험료 누계액: 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납입하기로 한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감액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 x 보험료 납입기간 x 12」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일반형"의 해약환급률: "일반형"의 납입보험료 누계액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을 말하며, 소수점 4번째 자리 이하는 버림하고 소수점 3번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4. 제2-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 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납입이 면제된 기간 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3"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5. "1" 및 "3"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일반형"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 6. 회사는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일반형"과 비교·안내해 드립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 <부표1-1>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 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5관 기타사항

# 제2-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부표2-1

# 보험금 지급기준표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 6시간이상<br>전신마취수술급여금  | 특약보험기간 중「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br>(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br>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br>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6시간 이상<br>의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br>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br>(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br>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br>유가 발생한 경우 "특약보험가<br>입금액의 25%"를 지급함) |  |  |
| 3대질병<br>6시간이상<br>전신마취수술급여금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br>(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질<br>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3대질병"의<br>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신마취를 하<br>고 마취시간 6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았<br>을 때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br>(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br>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  |  |  |
| 3대질병<br>중환자실입원급여금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3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br>특약보험가입금액의 2%<br>(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br>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                                      |  |  |
| ※ "3대질병":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br>※ 1년미만: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   |   |  |  |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2.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적립 액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3대질병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5.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부표2-8>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



# 별첨2 [표 5-1] 참조

부표2-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



# 별첨2 [표 6-1] 참조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부표2-4



# 별첨2 [표 7] 참조

부표2-5

뇌혈관질환 분류표



별첨2 [표 11-1] 참조

부표2-6

#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 별첨2 [표 12-1] 참조

부표2-7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중환자실)



# 별첨2 [표 57] 참조

부표2-8

질병 및 재해분류표



별첨2 [표 4] 참조

# 중증치매보장특약 (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약 관 목 차

#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참조

# 제2편 개별사항

#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2-1조의2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5조 사고증명서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2-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2-9조 특약의 소멸

제2-9조의2 "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11조 해약환급금

# 제5관 보험금 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제2-12조 적용대상

제2-13조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제2-14조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2-15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16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6관 기타사항

제2-1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중증치매보장특약 (무배당, 해약<del>환급금</del> 미지급형)

-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장이 가능합니다.
- ※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종목에 따라 특약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일반형의 경우: "(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부분이 "(무배당)"으로 변경됩니다.

#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제1-1조부터 제1-13조까지를 이 특약 "제1편 일반사항"으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의 위치는 목차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2편 개별사항

#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치매보장개시일은 제2-1조의2("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1조의2("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제2항에서 정한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진단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일]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진단된 경우 제2-1조(특약 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 제2-1조의2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로 진단되고, 그 상태가 진단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한국판 Expande 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3점이상(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CDR척도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중증치매상태"와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진단은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있습니다.

또한,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피보 험자의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진단함으로써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다만, 피보험 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그 진단일 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될 수 있습니다.

# "중증치매상태"의 최종 진단확정 예시 90일 2024.2.18 2024.7.1 2024.9.29 치매보장개시일 "중증의 인지기능의 "중증치매상태" 장애" 진단일 최종 진단확정일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될 수 있습니다.

#### 뇌영상검사 예시

#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 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를 원인으로 발생한 "중증치매상태"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⑤ 회사는 제3항에서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 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중증치매진단

급여금(<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특약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 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에 의해 납입면제가 된 경우 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이 특 약이 해당 약관의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 험료 납입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② 재해는 특약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며, 특약보험기간 중 발생 한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중 해당 재해와 관련한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치매진단급여금은 "중증의 인지기능 의 장애"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지 나기 전이라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면 중증치매진단급여 금을 지급합니다.
- ④ 특약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된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 애"가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하는 기간 중 특약보험기간이 만료되 어 "중증치매상태"의 최종 진단확정이 특약보험기간 이후에 되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시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치매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⑤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중증치매상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치매진 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의 인 지기능의 장애"가 진단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계없이 지급금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① 제5항 및 제2-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 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 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심신상실

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 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

## 제2-5조 사고증명서

- ① 제1-5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2호에서 말하는 이 특약의 사고증명서는 "사망진단서, "치매상태"에 대한 진단서, 진단서(병명 및 분류코드 기입),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방법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

#### 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민법 제 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 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 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2-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이 특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 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감액 이후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최초 가입 당시에 안내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감액처리에 대한 설명

#### [ 감액 ]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계약자적립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의 해약환급금 지급 예시 ]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구 분         | 감액전           | 감액후          |
|-------------|---------------|--------------|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 500만원        |
| 감액시점의 해약환급금 | 400만원         | 200만원        |
| 감액할 때 지급금액  | 200만원 ( = 400 | 만원 - 200만원 ) |

#### 계약자적린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sup>㈜</sup>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산출기초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이율 및 위험률 등

# 제2-9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특약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9조의2 "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10조(특약의 무효) 제1항 이외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다만,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1조의2("중증치매상태"

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로 진단된 경우.

####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 제2-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2-11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1.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일반형"보다 낮은 보험료 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2. 이 특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고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고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이후 특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

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누계액<sup>(주①)</sup> × "일반형"의 해약환급률<sup>(주②)</sup>

(주)

- ① 납입보험료 누계액: 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납입하기로 한 특약 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감액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 x 보험료 납입 기간 x 12, 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일반형"의 해약환급률: "일반형"의 납입보험료 누계액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을 말하며, 소수점 4번째 자리 이하는 버림하고소수점 3번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4. 제2-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 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납입이 면제된 기간 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3"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5. "1" 및 "3"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일반형"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 6. 회사는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일반형"과 비교·안내해 드립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은 <부표1-1>"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5관 보험금 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 제2-12조 적용대상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제2-13조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또는 "이 특약을 체결한 이후 「특약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기 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청구인은 제2-14조(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따라 변경지정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2-12조(적용대상) 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2-14조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이 특약을 체결한 이후 「특약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기 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 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 (회사양식)
- 2. 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 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

# 제2-15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대리청구인은 제2-16조(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2-12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16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치매상태"에 대한 진단서, 진단서(병명 및 분류코드 기입),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
  -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 5. 기타 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6관 기타사항

### 제2-1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부표2-1

# 보험금 지급기준표



| 구분            | 지급사유  | 지 <del>급금</del> 액 |
|---------------|---|-------------------|
| 중증치매<br>진단급여금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br>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br>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br>확정에 한함) | 특약보험가입금액의<br>100% |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이 특약의 보험금 지 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2.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액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진단된 경우 제2-1조(특약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4. 중증치매진단급여금은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면 중증치매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진심을품은14대보장특약(무배당)







# 약 관 목 차

###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참조

### 제2편 개별사항

###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2-1조의2 개별 용어의 정의

제2-1조의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4 "중증 갑상선암" 및 "중증 이외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1조의5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6 "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7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8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9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및 "말기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2-1조의10 "중증 세균성 수막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11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12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13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14 "관상동맥우회술"의 정의

제2-1조의15 "심장판막수술"의 정의

제2-1조의16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의 정의

제2-1조의17 "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5조 사고증명서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2-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2-9조 특약의 소멸

###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11조 해약환급금

### 제5관 기타사항

제2-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부표2-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

[부표2-3] 갑상선암 분류표

[부표2-4] 유방암 분류표

[부표2-5] 전립선암 분류표

[부표2-6] 뇌출혈 분류표

[부표2-7]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부표2-8]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및 "말기만성폐질환"의 정의

[부표2-9] 루게릭병(근위축축삭경화증) 분류표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해당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장이 가능합니다.

# 진심을품은14대보장특약(무배당)

###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제1-1조부터 제1-13조까지를 이 특약 "제1편 일반사항"으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의 위치는 목차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2편 개별사항

###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암" 및 "중증 갑상선암" 보장개시일은 제2-1조의3("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및 제2-1조의4("중증 갑상선암" 및 "중증 이외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합니다.

# "암" 및 "중증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예시 90일(6월 28일 ~ 9월 25일) <"암" 및 "중증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 제외 기간> 6월 28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

### 제2-1조의2 개별 용어의 정의

제1-2조(용어의 정의) 외에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 가. 올페이 대상계약: 이 특약의 부가시에 주계약(전환형계약 제외)을 말하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과 「올페이대상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이 "주계약 및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료"에 연동되는 특약은 "올페이 대상계약"에서 제외 합니다.
- 2. 지급금 관련 용어
  - 가. 올페이 대상계약 총 보험료: 「올페이 대상계약」의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올페이 대상계약」 보험료 총액(다만, 추가납입 보험료 제외, 할인 전 보험료 기준)을 말합니다.

# 제2-1조의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표2-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 1. 분류코드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 2. <부표2-3>"갑상선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 3. 제2-1조의5("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 내암
- 4. 제2-1조의6("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방 광암
- 5.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유방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부표 2-4> "유방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하며, 여성 피보험자에 한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부표 2-5> "전립선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의한 "암"에서 제2항에서 정의한 "여성유방암" 및 제3항에서 정의한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여성유방암 및 전립선암」이 외의 암"이라 합니다.
- ⑤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분류코드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중 <부표2-3>"갑상선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암

악성신생물(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을 제 외한 암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을 기준으로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여부 및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단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단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단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제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 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 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1조의4 "중증 갑상선암" 및 "중증 이외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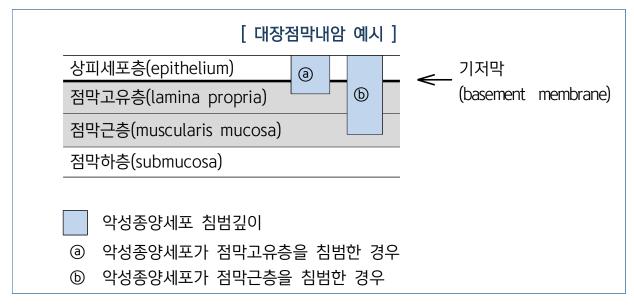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증 갑상선암"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중 <부표2-3>"갑상선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수질성암 (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은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중증 이외 갑상선암"이라 함은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질병 중 "중증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③ "중증갑상선암" 및 "중증 이외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증갑상선암" 및 "중증 이외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 갑상선 암" 및 "중증 이외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1조의5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 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 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 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읍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1조의6 "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비침습방광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방광의 악성신생물(암)(C67)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방광 의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 포가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침습유두암 (papillary carcinoma) 상태로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 [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 제8판"에서 정한 병기상 TaNOMO인 방광암을 말합니다.

# [ 비침습방광암 예시 ]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 @ 점막층 고유층(lamina propria) 전막하층(submucosa) 근육층(muscle)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③ 악성종양세포가 점막 이행상피세포층을 침범한 경우

- ② 제1항의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이 향후 개정되는 경우에는 "비침습방광암"의 진단확정 시점에 적용되는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을 따릅니다.
- ③ "비침습방광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읍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 하며, 이 경우 "비침습방광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비침습방광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1조의7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중 <부표2-6> "뇌출혈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할 수 있습니다.

###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 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 뇌혈관조영술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되는 물질(조영제)을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gamma$ 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 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촬영법

### 양전자방출단층술(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 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 뇌척수액 검사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 는 것

### 제2-1조의8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부표2-7>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등을 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